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관련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박성훈>

1. 본인 확인과 관련한 법률

- 전자정부법 제10조
-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8조

<기타 오프라인>

- 주민등록법 제29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동산 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2.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후 나타난

몇가지 쟁점

- 공직선거법 게시판 본인확인제 폐지
- 온라인 섯다운제와 관련한 본인확인제(성인 인증)
- 청소년보호법 내 유해매체물 관련 성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사용 규제와 본인확인기관 지정
- 불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전화(일명 대포폰)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의무화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관련 조항 및 유사 조항 폐지

- 선관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본인확인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2012.8.2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 삭제 관련 개정안 발의(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2.9.11.)

4. 본인확인제와 표현의 자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실명제 도입 금지, 2004)
 - 게시판 본인확인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실명제 대상 사이트 확대를 위한 개정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2009)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 인터넷 실명제 제도 개선 및 범죄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심자에 한하여 제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과 표현의 자유 제한
 -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에 대한 뉴스 기사 모니터링을 하고자 기사제목(알몸투시기) 검색에 대한 성인 인증
 - 목욕탕 CCTV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뉴스 기사 모니터링을 하고자 기사제목(목욕탕 CCTV에 의한 알몸 노출) 검색에 대한 성인 인증

5. 본인확인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 본인확인을 하라고 한 것일 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포털이 가장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선택한 것임
- 게시판 본인확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
- 주민등록번호의 전세계 공유화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검색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해외 블로거는 영어, 중국어 등으로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

여 사이트에 가입하는 설명자료까지 첨부

- 온라인 게임 섯다운제 이후 나타나는 국외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 해외 게시판에는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글에 답글로 국내 성인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2013.2.4.): 친권자 해제 요청, 모바일 게임 제외
 -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2012.9.25.):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배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6. 본인확인기관 인증과 이동통신사 선정

-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2013.2.18.)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선정(2012.12.28.)
-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2.8.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2.12.17.)
- 본인확인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에 있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현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됨
 - 통신업체들이 요금결제, 이용료 정산, 본인 인증, 제휴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타 업체의 수는 수 백개에 이르며, 수많은 대리점 혹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수는 대리점 등을 포함하여 1,000~2,000여개 이르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2009)
-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그 심각성이 더할 수 있음
 - 휴대폰 가입자 정보 92만명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주고 1억 여원 수

- 령한 이동통신회사 마케팅 부서 과장 구속(2004)
- 이동통신회사 휴대폰 가입자 15만명, 보험회사와 인터넷 기간망 통신사 등에서 모은 500만건을 포함하여 540만 건의 개인정보를 성인광고에 활용한 브로커 구속(2004)
 -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개인정보를 판매한 LGT, KTF 본사직원과 대리점 점주 기소(2004)
 - 이동통신사 가입자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전국의 심부름센터 등에 팔아온 개인정보 판매상과 통신사 직원 구속(2005)
 - 부산 SKT 대리점 고객정보 서류 14만원에 고물상 매각 후 수거(2007)
 - SKT 계열사 SK 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2011)
 - KT 영업시스템에서 8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해킹 프로그램 제작후 유출된 개인정보를 휴대전화판촉 업체에 팔아넘긴 프로그램 제작자와 텔레마케팅 업자 입건(2012)
 - SKT KT 가입자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빼낸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팔아넘긴 협력업체 직원 기소(2012)
-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인정되면서 개인정보의 집중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본인확인, 금융계좌 확인을 위하여 신용평가기관에 확인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일정금액을 신용평가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요청 기관은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가 아닌 본인확인 여부에 대한 Yes, No 값만 가지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이 본인확인을 해주면서 그 기록이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확인 데이터 기록도 삭제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및 정보인권 보고서 정책 제안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 주민등록제 재검토 또는 제한
- 제1기 제2기 NAP 권고: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규정 개선
- 정보인권 보고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나이, 출신지역, 성별 등이 공개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
 - 기업들로 하여금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
 - 온라인 게임 섯다운제 등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실시 후 규제 효과와 인권침해를 이익형량하여 필요하다면 폐기